

의안번호	제377호
의결 연월일	2023년 9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
조례안

발의자	박지현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3년 8월 24일

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박지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7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3년 8월 24일
발의자 : 박지현, 이동우, 김종필,
김호경, 박진희, 변종오,
유재목

1. 제안이유

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심리회복, 임시거처 등을 지원하여 조속한 생활안정 및 일상복귀 등에 실효적으로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“화재피해주민”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함(안 제2조)
- 다.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라.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마.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, 심리회복 지원, 임시거처 지원, 유관기관 협력 등에 관한 규정함(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다. 협의 : 충청북도 소방본부 대응총괄과

라. 조례안 예고 : 예고대상(의회홈페이지 게시 예정)

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“화재피해주민”이란 충청북도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 중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도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
4.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
5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
6. 그 밖에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가 화재피해로 인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
제3조(도지사의 책무)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 및 피해 회복을 위해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중복지원의 금지)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.

제5조(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)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심리회복 지원
2. 임시거처 지원
3. 화재현장 피해복구 지원
4. 그 밖에 도지사가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심리회복 지원)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기관·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.

제7조(임시거처 지원) ①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, 1일 지원 금액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별표 2의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해당 관계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.

제8조(유관기관 협력 지원)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, 민간기업·단체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<생 략>
2. “수급자”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.
3. ~ 9. <생 략>
10. “차상위계층”이란 수급권자(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)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.
(중위소득의 50% 이하의 계층)

□ 장애인복지법

제6조(중증장애인의 보호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 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(이하 “중증장애인”이라 한다)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□ 한부모가족지원법

제4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모” 또는 “부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.

가.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(遺棄)된 자

나.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

다. 교정시설·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

라. 미혼자{사실혼(事實婚)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}
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

1의2. “청소년 한부모”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.

2. “한부모가족”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.

3. “모자가족”이란 모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(世代員)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
4. “부자가족”이란 부가 세대주{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}인 가족을 말한다.

5.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,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)의 자를 말한다.

6. “지원기관”이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행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.

7. “한부모가족복지단체”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.

제5조(지원대상자의 범위)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·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아동의 연령을 초과하는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그 자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구성원을 지원대상자로 한다.

□ 노인복지법

제27조의2(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노인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의 서비스 및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 등에 관하여는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한다.

□ 다문화가족지원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다문화가족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.

가.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「국적법」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나. 「국적법」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

2. <생략>

충청북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및 일상복귀 등에 실효적으로 기여

2. 비용 발생 요인

-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·재산적 피해를 입은 도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

3. 관련조문

- 제5조(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) 도지사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 1. 심리회복 지원
 2. 임시거처 지원
 3. 화재현장 피해복구 지원
 4.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4. 비용 추계결과

- 가. 재정수반요인 : 도민의 임시거처 지원을 위한 사업비
(비용추계 세부내역 참고)
- 나. 추계의 전제 : 추계기간은 2024년 ~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
- 다. 추계결과 : 36,750천원
 - 임시거처 지원 : 36,750천원
- 라.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